

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2. 3. 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정이유

-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는 군 작전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설투자가 미약하여 관광객의 편의시설조차 열악한 상태이며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을 더욱 유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임
- 따라서 제3땅굴 관광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의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함.(안 제 3 조)
-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규정함.(안 제 4 조)
- 사용료 징수에 관한 위탁관리 사항을 규정함.(안 제 7 조)

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(이하 “민북시설”이라 한다)의 시설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.)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어린이·청소년 : 만 7세이상 18세이하의 자(초·중·고등학생)
2. 일반인 : 만 19세 이상인자
3. 단 체 :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

제3조(사용료의 징수) ① 민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빈·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3. 65세 이상의 노인
4.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
5.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
6.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

7. 현역군인

8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5조(요금의 게시)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설이용권) 시장은 시설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관리)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, 단체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제8조(수입금의 사용제한)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과태료) 사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문화체육과(☎ 940-4363)
입안자	문화체육과장	박재홍
	관광정책담당	김진성
	담당자	이성근

[별표]

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

구 분		금 액
개 인	일반인	3,000원
	어린이·청소년	2,000원
단 체	일반인	2,500원
	어린이·청소년	1,500원